

회계질서의 확립과 인정과 세 배제방안

회계고문, 공인회계사 김 용 모

1. 기업회계의 개념과 제기능

기업회계는 기업에 투하된 자본의 증감, 변동의 과정을 기록하고 계산정리하므로서 기업 그 자체의 계속 유지와 운영발전을 주안으로 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계라 하면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업체 및 회사기업 등 각종의 경제주체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회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경영활동의 성과 계산에 그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기업회계의 기능은 영업성과(기간계산)와 재정상태(시점파악)를 기업 외부의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대외적 기능과 또한 회계기록에서 얻어진 회계자료를 기업 내부의 경영과 또는 관리자에게 제공하므로서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내적 기능으로서 대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를 재무회계라고 하며 후자는 관리 목적을 가지므로 관리회계라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회계를 아래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세무회계를 관리 기능에 속시킬 수는 있다고는 하나 그 중요성으로 보아 세무회계에 기초적 차원이 되는 기능적 분리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과 차이

전술한 바와 같이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의 기초 위에서 존재한다는 점으로 본다면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의 개념적 일부분에 존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목적관의 차이가 명문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내용에서 검토되는 바와 같이 세정당국에서는 근대적 기업회계가 최대한도로 존중되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불가분의 결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양자의 목적관이 상이한 점을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업회계의 목적은 전항 개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기업의 기간성과계산과 경제가치의 시점파



악 및 경영관리의 도구로서의 목적이 있음에 반하여 세법은 단순히 특정의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인 소득계산의 정확만을 기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소득의 산정파악에 관한 회계적 측정 전달을 통하여 세 조세 부담능력의 측정에 관하여 당국과 납세자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나 양자가 평균적 조화를 이루도록 함에 세무회계의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회계제도획립의 필요성

이상의 이론적 근거로 보아 단위조직과 회계는 상호 절대성을 가진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는 매우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각별한 표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각별적인 표준의 설정은 어디 까지나 회계행위판단의 일반적 기준에 불과하게 된다.

일반적 회계원칙은 다수의 기업군으로 형성되는 산업사회간에 있어 하나의 going concern이 되게끔 하는 사회에 일반적으로 인정될 기준인 것이므로 각종 산업별로 적합한 합계의 제도적 규제는 하나의 산업군의 통일성을 기하고 대외적으로는 산업적 공신력을 양양함과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회계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합리적 경영관리의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4. 자진신고 납세제도와 그 정책 의의

상법(제29조~제33조)의 규정에서도 상인은 상업장부를 비치하도록 규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는 기장에 의한 자진신고 납세를 적극 장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는 강제규정으로서 이를 촉진시키고자 의무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의(意)를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경우

법인에 있어서는 복식회계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보다 세율이 낮은 반면에 기장불이행가산

세(산출세액의 50/100), 신고불이행가산세(산출세액의 50/100), 납부불이행가산세(미납부세액의 10/100), 등의 가산세액으로 과료하고 있다.

② 개인의 경우

개인은 기장의 무를 3구분하고 복식회계의 무자(1기의 영업세 과세표준 즉 의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개인)와 간이장부의 무자(1기의 영업세 과세표준이 900만원 이상의 자) 및 일기장의 무자(전 두의 무자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불이행가산세와 이행자에게는 은전규정(恩典規定)을 법제화하고 있다. 즉 복식부기의 무자인 개인에 대한 가산세로서는 법인과 동일하며 간이장부의 무자에 대하여서는 가산세가 각각 기장불이행가산세(산출세액의 5/100),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5/100), 납부불이행가산세(산출세액의 5/100) 등으로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일기장의 무자인 경우에는 의무이행에 따른 세액공제의 은전(恩典)을 베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장공제액(산출세액의 10/100), 신고공제액(신고상당세액의 10/100), 자진납부공제액(산출세액에서 기장공제액과 신고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의 10/100)을 각각 공제하여 의무이행을 장려하고 있다.

③ 녹색신고제도의 활용과 특전

녹색신고란 성실한 납세의 무자에 대하여 실지 조사방법을 지양하고 납세의 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서면조사만으로서 세액을 결정하므로서 사전 사후의 이중적 조사방법을 단일화하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의 무자와의 접촉회수를 적게 하므로서 납세의 무자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려는데 있는 것이며 한편 성실신고납세를 촉진코자함에 그 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녹색신고의 대상을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같이 각각 두 사업년도에서 계속하여 자진신고납부에 따라 실액(實額) 조사를 받은 성실업체에 해당하고 있다.

더구나 요즈음 세정 당국에서는 금년 7월 1일에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한 녹색신고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지난 3년간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균거납세한 법인(개인은 2년간)에 대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연장, 특별상차범위확대, 분할납부허용 등의 특전을 베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상의 여러가지 세법상의 강제규정이나 특전규정은 다같이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증빙서를 균거로 하는 균거납세의 촉진책인 동시에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나아가서는 명령한 세무행정을 이루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5. 인정파세 배제에 따른 세무대책

인정파세라 함은 이상에서 지적한 의무규정을 이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상자에게 정부가 자기 주관대로 인정결정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인정파세는 공정타당한 객관적 기준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세정 당국이나 또는 납세의 무자간에 다같이 불만의 악요소가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원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이에 따른 가장 큰 원인으로서 기장업무기술의 미흡에 두고 각 관할 세무서를 통한 회계기술의 지도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제에 우리는 업체의 대소를 막론하고 우리 스스로 중요성을 인식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되겠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책은 두말할 것 없이 우선 기업자체가 온갖 인내와 노력으로서 기업회계의 질서를 확립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세법을 토대로 한 세무회계에 접근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일조일석에 이룩되는 것이 아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불굴의 각오로서 세무회계에 임해야 된다고 본다. 더우기 현행세정 당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축사 업무에 대한 인정파세 소득표준율은 43%란 고율이 인정되고 있음을 볼 때 총수입(총설계비)의 평균 20% 이상이 소득세로서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고율의 소득표준율의 시정을 위하여 협회의 임원들은 당국을 상대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무리한 활동에서 보다 균거납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대내적 세반활동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확립되는 날 비로소 인정파세는 배제된다고 본다.

6. 결 론

전술에서 본인은 기업에서의 회계의 중요성을 들었으며 세무회계가 또한 기업회계에서 기초가 됨을 약속하였다. 또한 인정파세의 원인이 어디에 있음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서 해결방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또 한 가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회원 각위의 과제해결을 위하여 우리 건축사만이 가질 수 있는 설계업무에 적합한 회계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제한 재무제표규칙과 회계처리방법을 정한 회계규정이 만들어졌고 동 규칙을 조기시행할 것을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앞으로 각회원들 스스로가 시행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상호협력을 아끼지 말아 줄 것만이요망되며 합리적인 운영의 묘만이 한갓 남은 과제가 아닌가 한다.